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595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고,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의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.(안 제4조제1항)
- 나.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함.(안 제5조제3항)
- 다. 출산지원금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·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함.(안 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 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, 제21조
- 나. 예산조치 : 2021년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예산 6,000천원 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1. 3. 11. ~ 2021. 3. 31.) 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 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4) 성별영향 평가서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모의”를 “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”로, “사람에게 지원”을 “사람(이하 “신생아의 보호자”라 한다)에게 지급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”를 “없다”로 한다.

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”를 “신생아의 보호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”를 “구비서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관내”를 “서울특별시 양천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”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기준의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, <u>부모의 사망</u>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<u>사람에게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신생아의 출생 후</u> <u>부모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(이하 “신생아의 보호자”라 한다)에게</u> 지급----- -----</p>
<p>제4조(지원기준 및 지원액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:</u> <u>100만원</u></p> <p>2. <u>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:</u> <u>50만원</u></p>	<p>제4조(지원기준 및 지원액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지원절차)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장애인가정의 <u>관내</u>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.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<u>장애등급</u> <p>② (생략)</p>	<p><u>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지원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서울특별시 양천구</u> ----- 3. ----- 「<u>장애인 복지법</u>」 제32조에 따른 <u>장애인 등록 여부</u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지 서식]				[별지 서식]			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				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			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	주 소			
	전화번호		장애유형 및 등급	전화번호		장애유형	
	대상자와의 관 계			대상자와의 관 계			
출생아	성 명		출 생 일	성 명		생년월일	
대상자 (*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)	성 명		생년월일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주 소			
	전화번호		장애유형 및 등급	전화번호		장애유형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 금 주	금융기관명		예 금 주	
	계좌번호			계좌번호			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width: 100%;"> 년 월 일 </div>			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width: 100%;"> 년 월 일 </div>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			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		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				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			

현 행		개 정 안	
구비서류	1.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. 통장사본 1부	구비서류	통장사본 1부
<신 설>		개인정보·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		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: _____ (서명 또는 인)</p> <p>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(보호자)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
5. ~ 9. (생략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